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장 흥 순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흥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적정분포,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에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 2명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실제 운영자의 의견도 관련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신증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